

농약 판매·구매 정보의 기록 및 제공 마감기한 안내

(2024. 12. 2.,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)

2024년에 판매한 농약은 2025년 1월 31일까지 기록 및 정보 제공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.

- 판매상에서 농약을 판매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해당 내용을 전자적으로 기록하고 이를 농촌진흥청에 제공(전송)해야 함.
 - * 「농약관리법」 제23조의2,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4, 「농약 판매기록 등의 방법 및 농약안전정보시스템 운영 요령」 (농진청 고시)
 - * 과거의 농약 판매·구매 정보를 수정하는 사례가 있어 정확한 판매·구매 이력을 확인하기 어렵고 시스템 서버에 부하 발생하고 있음
- 농약이 회수·반품된 경우 기존 판매정보를 수정하면 안되고 회수·반품 날짜를 기준으로 별도로 판매정보를 기록·제공해야 함.
 - * (예시) '22년 1,000병 판매 후 '24년에 100병이 반품된 경우 '22년 판매 정보를 900병으로 수정하지 말고 반품된 날짜로 반품 정보를 생성해야 함
- 2024년 판매한 농약 정보는 연말·연초의 현장상황을 고려하여 2025년 1월 31일까지 추가, 수정 등이 가능하도록 운영
 - * 판매정보를 기록·보존·제공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공한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(농약관리법 제40조제2항제6호·7호)

**2024년 판매된 농약 정보는 2025년 2월 1일부터
추가, 수정 등이 안됩니다.**

< 농약관리법 제23조의2 >

제23조의2(판매·구매 정보의 기록 및 보존 등) ① 제조업자·수입업자·판매업자가 농약등을 판매한 경우 또는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이 농약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자적으로 기록 및 보존하여야 한다. 다만, 자신의 영농활동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에게 판매하는 용기·포장의 크기가 50ml (g) 이하인 소포장 농약등은 제외한다. <개정 2018. 12. 31., 2021. 6. 15.>

1. 농약등 구매자(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의 경우 사용자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이름·주소·연락처
2. 농약등의 품목명·수량 등 판매정보(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의 경우 사용정보를 말한다)
3.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

② 제조업자·수입업자·판매업자 및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은 제1항 각 호의 기록 중 농약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 12. 31., 2021. 6. 15.>

③ (생략)

④ 제1항에 따른 판매·구매 정보의 기록 및 보존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. <신설 2018. 12. 31.>
[본조신설 2010. 4. 12.] [제목개정 2018. 12. 31.]

<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의4 >

제24조의4(판매·구매 정보의 기록 및 보존 등) ①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제조업자·수입업자·판매업자 및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이 기록·보존해야 하는 판매·구매 정보는 별표 3의8과 같다. <개정 2022. 12. 14.>

②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제조업자·수입업자·판매업자 및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이 농촌진흥청장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는 별표 3의9와 같다. <개정 2022. 12. 14.>

③ 제조업자·수입업자·판매업자 및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은 제1항에 따른 농약등의 판매·구매 정보의 기록을 3년 간 보존해야 하며, 판매업자의 판매 정보 기록 장부는 별지 제24호의3서식과 같다. 다만, 전자화된 장부를 이용할 경우 별지 제24호의3서식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. <개정 2022. 12. 14.>

④ 제조업자, 수입업자, 판매업자 및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은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농약안전정보시스템(이하 “농약안전정보시스템”이라 한다)을 활용하거나 농약안전정보시스템과 연계된 별도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해 농약등의 판매·구매 정보를 기록하거나 농촌진흥청장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. <개정 2022. 12. 14.>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약등의 판매·구매 정보의 기록·보존과 정보 제공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. 이 경우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에 관한 사항은 검역본부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. <개정 2022. 12. 14.>

[전문개정 2019. 6. 26.] [제24조의3에서 이동, 종전 제24조의4는 제24조의5로 이동 <2022. 12. 14.>]

< 농약 판매기록 등의 방법 및 농약안전정보시스템 운영 요령(농촌진흥청 고시) >

제5조(정보의 기록 및 제공 방법) ① 제조업자·수입업자·판매업자(이하 “제조업자등”이라 한다.) 또는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정보가 발생한 날로부터 **10일 이내에 기록·제공**하고 제공할 때에는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야 한다.<개정 2023. 3. 3>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자등 또는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이 정보의 기록 및 제공을 위하여 다른 전산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에게 농약안전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<개정 2022. 8. 11., 2023. 3. 3>